

졸업학기(조기) 취업자 관리규정

2016. 10. 15. 최초제정

2017. 09. 01. 부분개정

2021. 10. 01. 부분개정

2025. 07. 01. 부분개정

2026. 08. 10. 부분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졸업학기 취업자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①졸업학기 취업자라 함은 졸업 전 취업하여 졸업학기에 전공과 연관 있는 산업체 등에서 취업이 확정되어 근무 중인 재학생을 의미한다.<개정 2017.09.01., 2021.10.01., 2025.07.01.>

②졸업학기라 함은 졸업을 앞둔 직전 학기를 의미하며,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학기 이전학기 또는 졸업학기 취업자로 신청한 후 졸업탈락한 자가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학기는 졸업학기로 보지 아니한다.<신설 2021.10.01.>

제3조(적용대상 및 산업체 근무 인정 기준) ①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학생과 졸업학기 중 취업으로 인해 휴학 후 졸업학기를 마치기 위해 복학하는 재학생에 한하며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.<개정 2017.09.01., 2021.10.01.>

②졸업학기 취업자로 출석인정 등을 받기 위한 산업체 근무 인정 기준은 재직하고 있는 산업체가 학생이 선택한 전공분야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관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관련 학과 및 관련 직업 분야를 참고로 하여 판단한다.<신설 2021.10.01.>

③졸업학기 취업자로 출석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.<신설 2025.07.01.>

1.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중 택일) 가입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자<개정 2026.08.10.>
2. 부사관 또는 임관 예정 자(후보생)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제4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업결손에 따른 출석인정
2. 졸업학기 교과목 성적평가<개정 2021.10.01.>

제5조(교과목 이수확인) ①졸업학기 취업자는 교과목 이수 여부와 졸업 가능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증명 등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[별지 제1호 서식] 및 [별지 제2호 서식]과 재직증명서 등 취업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10.01.>

②졸업학기 취업에 따른 교과목 이수는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, 과제물, 출결점수 등을 통한 평가에 의한다.<개정 2021.10.01.>

제6조(성적평가 등) ①졸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에 대한 기준은 학칙시행세칙 제45조

(성적평가)를 준용한다.<개정 2021.10.01.>

②졸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은 졸업학기에 한하여 학칙 제44조(시험) 및 학칙시행세칙 제36조(출석)와 제38조(출석인정)에 따라 처리한다.<신설 2021.10.01.>

제7조(준수사항) ①해당 학과는 졸업학기 취업자의 학점 취득과 졸업을 위해 관련된 제반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09.01., 2021.10.01.>

1. 삭제<2021.10.01.>

2. 삭제<2021.10.01.>

3. 삭제<2021.10.01.>

② 졸업학기 취업자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,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물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부사관 임관 예정자가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중간평가, 종합평가, 수시평가 중 하나를 반드시 치르고 졸업학기 성적은 해당시험의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에 따라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.<개정 2025.07.01.>

③ 졸업학기 취업자의 수강신청은 학칙시행세칙 제15조를 준용한다.

제8조 삭제<2021.10.01.>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 졸업학기 취업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졸업학기(조기)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

결 재	지도교수	학과장

신청 학생	학 과		학 번	
	성 명		연락처	
취업 현황	산업체명		소재지	
	근무부서		직위(급)	
	입사일자	년 월 일	직장 연락처	

신 청 인 : (서명)

대전보건대학교총장 귀하

서약 사항 (*확인 후 서명)	■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 시행계획을 신고하였고, 교과목별 과제물 제출 및 중간평가, 종합평가 응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서약합니다. ■ 취업한 산업체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 소속 학과에 즉시 알리고, 퇴사 다음날부터 수강 신청한 강의에 즉시 출석할 것을 서약합니다. ■ 제출한 모든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보증하며, 허위사실 기재, 위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취업이 취소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할 것을 서약합니다. ■ 계속 근무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과(또는 대학)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숙지하였고, 미제출로 인한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할 것을 서약합니다.
	위 모든 사항을 숙지 후,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준수하며, 미숙지 및 미준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(서명)
붙임 서류	1. 졸업학기(조기)취업자 교과목 이수 현황표 2. 재직증명서 및 직장가입자 4대보험(건강보험/국민연금/고용보험/산재보험 중 택1) 가입확인서

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26.08.10.>

졸업학기(조기) 취업자 교과목 이수 현황표

결 재	지도교수	학과장

신청학생	학 과		학 번	
	성 명		연락처	
취업현황	산업체명		입사일자	년 월 일

학점이수 현황	졸업기준			이수학점		
	전공	교양	총학점	전공	교양	합계

■ 졸업학기 수강 교과목 및 담당교원 확인 (학생이 작성하고,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서명/인)

신청 학기		학년도 학기		신청 학점		전공	교양	합계
No.	수강신청 교과목명			학점	이수 구분	담당교수		비고
1						(서명/인)		
2						(서명/인)		
3						(서명/인)		
4						(서명/인)		
5						(서명/인)		
6						(서명/인)		
7						(서명/인)		
8						(서명/인)		
9						(서명/인)		
10						(서명/인)		
※ 담당교수님은 해당 학생의 조기취업에 따른 평가 방법 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※ 교과목별 과제물제출/중간평가/종합평가 응시는 필수 사항입니다.								

상기 내역은 수강신청내역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며,
과제물 제출 및 중간평가, 종합평가 응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신 청 인 : (서명)

대전보건대학교총장 귀하